

제247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
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행정안전국 주민안전과 소관)



행정재경위원회
전문위원

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441호
- 나. 제출자 : 고영찬 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3. 11. 15.
- 라. 회부일자 : 2023. 11. 15.

2. 제안이유

안전취약계층의 생명 및 안전 보호를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할 구역 내의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‘안전취약계층’ 및 ‘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’에 대한 정의 신설 (안 제2조제6호 및 제7호 신설)
- 나. 안전관리위원회 설치·기능에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사항의 심의 내용 추가(안 제6조제6호 신설)
- 다. 안전취약계층 지원 등 안전관리계획의 수립·시행 내용 신설 (안 제72조의2 신설)
- 라. 안전취약계층 지원사업 명시(안 제72조의3 신설)
- 마.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 명시 (안 제72조의4 신설)

4. 관계법령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4조, 제31조의2
-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조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된 안전으로
- 주요내용으로는
 - 안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서는 ‘안전취약계층’ 및 ‘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’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
 - 안 제6조6호에서는 안전관리위원회 설치·기능에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사항의 심의 내용을 추가함.
 - 안 제72조의2에서는 안전취약계층 지원 등 안전관리계획의 수립·시행 내용을 신설하고
 - 안 제72조의3에서는 안전취약계층 지원대상 및 사업에 대해 규정하고
 - 안 제72조의4에서는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 시설 지원사업 등에 대해 규정함.
- 본 개정안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1조의2(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)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이며, 각종 재난 및 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큰 안전취약계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

- 다만 신체적·경제적 사유 등으로 재난 대비·수습 능력이 미흡한 안전취약계층은 지원사업 등의 정보 접근 기회가 부족한 정보 소외계층일 가능성이 높은바, 각종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며,
- 또한 지원대상에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포함된 만큼 안전취약 계층의 안전을 효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재난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각 지원대상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됨.

붙임 : 관계법령 1부. 끝.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[시행 2023. 9. 15.] [법률 제19234호, 2023. 3. 14., 타법개정]

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,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·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8. 6., 2023. 5. 16.>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,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 12. 3.>

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,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와 시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2. 22., 2014. 12. 30., 2015. 7. 24., 2019. 12. 3.>

[전문개정 2010. 6. 8.]

제31조의2(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) ①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, 범위,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이 원활히 수행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9. 12. 3.]
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3. 7. 4.] [법률 제19160호, 2023. 1. 3., 일부개정]

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·관리와 소방용품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소방 기술·기준의 개발 및 조사·연구, 전문인력 양성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·시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